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방안 검토의견

최근 우리회는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과 LPG유통구조개선 및 안전관리체제 개선방안의 동시 조속 실시를 건의했다.

□ 검토배경

- 최근 LPG차량의 증가로 기존 충전소 중 대도시 도심권 소재 및 고속도로 소재 충전소의 경우 시설 개보수 및 용량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신규 안전거리 적용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대도시 도심권 및 고속도로 소재 충전소는 충전대기시간이 점증하는 등 포화상태로 안전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선대안 필요

□ 문제점

- LPG차량의 증가에 따라 최근 신규충전소도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지역은 제한적임
- 대도시 도심권
 - 주거·상업지역은 설치 불가 (건축법)
 - 주민 민원 (님비현상)
- 고속도로 : 휴게소내에 설치할수밖에 없는 제약

- 한편 대도시 도심권 및 고속도로 소재

충전소는 공급능력 초과로 안전관리의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대도시 도심권 및 고속도로는 기존 충전소의 확충이 요구되나, 신규 안전거리를 확보할수 없는 실정임
- 99. 7. 1 LPG법시행규칙 개정시 안전거리를 확대(98 부천·익산충전소 폭발사고 대응)하면서, “부칙 제3조” 경과조치로 기존 충전소는 종전 안전거리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단서” 조항에 「사업소 위치변경, 저장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은 신규 안전거리를 적용토록 함

□ 개선방안

- 대도시 도심권 및 고속도로에서는 신규 충전소 증가에 한계(특히 주민반대 민원)가 있으므로 기존 충전소의 활용도 제고 필요
- 따라서 기존 충전소의 확충을 위한 법규 정비 필요
(즉 기존 충전소의 시설 개보수 및 증설

시 종전 안전거리를 적용토록)

- LPG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중 단서를 삭제 또는 개정하는 방안
- LPG법시행규칙 제4조 변경허가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

※ 기존 충전소의 증설허용은 “도심충전소 외곽이전방침”과 관련하여 기존업계 이익 보호라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일부의 반사적 이익일뿐이며 특히 안전을 도외시한 근시안적 사고임

기존 충전소의 확충 및 안전강화방안

- 저장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 디스펜서 위치변경
 - 배관 위치변경
 - 저장탱크 위치변경 등
- 저장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
 - 저장탱크 증설 (10톤→20톤 등)
 - 디스펜서 추가설치
 - 펌프 등 동력 마력수 증대
 - 배관구경 확대 등

LPG 유통구조개선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동시 조속 실시 건의

1.우리 LPG충전 및 판매업계는 도시가스의 확산에 따른 산업위축에도 불구하고 서민대중 연료공급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한편 귀부에서도 지난해부터 LPG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통구조개선과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검토하시어, 최근 가스산업과에서는 “LPG유통구조개선방안”으로, 에너지안전과에서는 “LPG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구체화한바 있습니다.

3.그러나 우리 업계에서는 양 방안이 수레의 두바퀴와 같이 동시에 굴러야만 제

기능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충전소 · 판매소 · 소비자간에 용기를 매개로 하는 고정거래를 통해 안전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따라서 우리 LPG충전 및 판매업계는 가스산업과의 LPG유통구조개선방안(충전자 상호표시 등)과 에너지안전과의 LPG안전관리체계개선방안(구역판매제를 포함한 안전계약제 등)이 동시에 제도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조속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